

2023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50개사 모집 공고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① 모집분야 및 자격

- 모집분야 : 사업화·전략기술·한계재도전·공공혁신 4개 분야
- 지원자격 : 최근 5년('18.7.1~'23.6.31) 내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
- 우수성과 분야별 세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 * 수행 중인 기업은 전략기술 분야에 한함

분야	정의	지원자격
사업화	기술의 완성도와 사업성이 검증되고, 지원사업별 특성 및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 성과	최근 5년('18.7.1~'23.6.31) 내 중소기업R&D 성공(완료) 기업
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초격차 분야 포함)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성과 [참고] 12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22.10) ※ 밑줄은 초격차 10대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u>첨단 이동수단</u>, <u>차세대 원자력</u>, <u>첨단 바이오</u>, 우주항공·해양, 수소, <u>사이버보안</u>,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u>첨단로봇·제조</u>, 양자	최근 5년('18.7.1~'23.6.31) 내 중소기업 R&D 성공(완료) 또는 수행 중인 기업
한계·재도전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 *중소기업 R&D가 새로운 도전의 마중물이 된 성장스토리를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 R&D를 한 번이라도 수행한 이력을 보유한 기업
공공혁신	중소기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 중 공공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달혁신 우수제품 성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 분야별 세부 신청자격

분야	분야별 기준지표					
사업화	· 사업화 분야의 경우 필수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함					
	· (필수기준) '①과제매출액 기준'과 '②매출증가율 기준' 중 택1					
	구분	정의				비중
	① 누적성과 우수기업 (과제매출액 기준)	최근 5년 누적 과제매출액 50억원 이상 및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정(+)*인 경우 * 기준: 2022년 매출액>2020년 매출액				80%
	② 성장성 우수기업 (매출액 증가율 기준)	최근 5년 누적 과제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50% 이상*인 경우 *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0%
	· (사업별 우대기준) 주요 사업별 목적(특성)을 반영한 지표					
구분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	상용화R&D	산학연R&D	공정품질R&D	
특화 지표	누적 과제 수출액	개발시작 이후 투자유치 성과	누적 과제 매출액	개발시작이후 출원한 특허의 SMART특허지수	누적 생산비 절감액	
(기준 예시)	40억원 이상	정부출연금 2배 이상	100억원 이상	BBB등급 이상	2억원 이상	
전략 기술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보유 * (예시) 논문(SCI, H-index), 지식재산권(PCT특허, IP4, 피인용지수), 글로벌 시장점유율 등					
한계 · 재도전	· 경영위기 상황 극복 사례 및 뛰어난 기업 성장성* 등 보유 * 매출영업이익증가율 등 재무적 성과도 포함					
공공 혁신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공공매출액('20~'22년) 10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공공 서비스 개선 등 높은 사회적 기여도 보유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각 분야별 성과는 수행한 중소기업 R&D 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 ②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 ③ 정부 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붙임1 참조)
- ④ 우수사례집 제작, 언론홍보 등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여야 함

2 선정규모 및 방법

☐ 선정규모(안) : 총 50개사

☐ 선정방법

- 우수성·차별성, 파급효과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 우수성과 선정규모 및 평가기준 >

구분	선정규모	평가항목
사업화	35개사	지원사업 대표 가능성, R&D성과의 우수성/차별성,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전략기술	5개사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의 위상, R&D성과의 우수성/차별성,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한계·재도전	5개사	위기 극복의 우수성/난이도, 성공스토리의 차별성, 파급효과 및 미래 성장 가능성
공공혁신	5개사	사회적 기여도, 공공조달의 우수성, 시장성, 혁신성, 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3 지원 혜택

☐ 유공포상

- 우수성과 선정 기업(50개사)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 *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유공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혜택은 동일하게 부여

☐ 사업화 지원(‘24년~)

- (투자유치) 전담은행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추천하여 투자대상 우선검토 기회 부여
- (저리융자)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저리융자(‘23년 기준 1~1.8% 감면) 대비 추가금리 감면 혜택 제공

- (해외전시)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CES, MWC 등 해외 전시 참여 지원('24년~, 상위 10개사)

- (인재채용)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연구인력지원) 우대(가점)지원 및 취업전문사이트(인크루트) 전용 채용관 프리미엄 입점* 지원

* 업·직종별 최상단 광고배너 노출, 온·오프라인 부대행사 등을 통한 기업 홍보

☐ R&D 우대('24년~)

- 중소기업 R&D 성공평가 우대 등 후속 R&D 지원 시 우대

☐ 홍보

- 우수성과 기업에 대한 성공스토리를 특집기사 형태로 언론 홍보
-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및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기부)' 추천 등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3. 7. 24. (월)~2023. 8. 4. (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분 야	제출서류	비고
필수	우수성과 기업 신청서	서식 1
	우수성과 사례 기술서(분야별 택1)	서식2-1~4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기재한 우수성과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선택	수출액, 투자유치, 과제매출, SMART특허지수, 생산비절감액 공공매출액, 수상실적 등 기타 성과 증빙서류(해당시)	서식 4
	기관 추천서(해당시)	
선정시	공적조서 및 동의서 등 포상관련 서류	추후제출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우수성과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R&D 우수성과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7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044-300-0712, 0713)

5 추진일정 및 세부 절차

구 분	기 간	세부절차
공 고	7.10~8.4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SMTECH 홈페이지
↓		
신 청 · 접 수	7.24~8.4	· SMTECH 접수[TIPA] · 기업별 1건만 제출 가능
↓		
신 청 서 류 검 토	8월 말	· 신청서류 등 자격 요건 및 성과 검증
↓		
우 수 성 과 기 업 선 정 심 사	~9월 말	· 내·외부 전문가 심사
↓		
공 적 심 사 및 포 상 자 확 정	~10월 2주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확정
↓		
포 상 수 여	12월 초	· 사업화 성과확산 행사 시 포상

* 접수현황 및 절차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 포상기준

☐ 수공 기간

-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추천 제한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중화운동 관련자가 민중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단체 (기관)
- 2)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3)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4)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일반국민”과 동일)
- 6)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사업화성과 정의 및 증빙자료(예시)**

성과명	성과 정의	제출 증빙자료(예시)
과제매출액	· 수행과제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내수액과 수출액을 합한 금액)	· 매출(수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 재무제표, 수출 면장(수출신고 필증), Local L/C 계약서, 실적확인서 등
수입대체액	· 수행과제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해 기존 수입품을 대체할 경우의 추정 금액	· 내부 회계 자료 또는 수입대체 효과 산정내역서 등
기술이전액	·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제3 기관에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	· 기술이전 실적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기술료 수입 매출내역 등
생산비용 절감액	· 수행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원가) 절감액	· 비용절감 실적확인서, 제조원가명세서, 매출원장(제품별 결산서, 제품별 수불부), 원부재료 구매대장 등
VC투자유치	· 과제 참여 후 외부 기관(벤처캐피탈, 창업 투자회사 등)을 통해 받은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은행예금거래내역 등
IPO (기업공개)	· 과제 참여 후 기업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	· 상장증명서 등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M&A (인수합병)	· 과제 참여 후 타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획득하거나 결합	· 인수합병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성과	· 국내외 특허, 수상실적, 인증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라고 판단되는 성과	· 특허출원서, 상장 사본, 인증서 사본 등 해당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식 1〉

우수성과 기업 신청서

신청항목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제도전() 공공혁신()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생산품			설립일자		
종업원수			대표자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명					
과제협약연도			과제번호		
과제명					
매출액 (단위: 백만원)	2020년	백만원	과제매출액 (단위: 백만원)	년	백만원
	2021년	백만원		년	백만원
	2022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생산비절감액	년	백만원	과제수출액 (단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투자유치	건	백만원	SMART 특허지수	등급명	최우수 등급 특허 1건
전략기술 분야			혁신제품명		
			혁신제품번호		
수상실적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우수성과 요약	서식2의 우수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 과제매출액, 과제수출액, 생산비절감액, 투자유치, SMART 특허지수, 전략기술 분야, 혁신제품 정보 등 모든 실적은 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서식 2-1〉

우수성과 보고서 (사업화)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 1)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2) 기업 성장 기여도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 신안 등)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수상실적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서식 2-2〉

우수성과 보고서 (전략기술)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 1)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위상(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등)
-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 신안 등)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수상실적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서식 2-3〉

우수성과 보고서 (한계·재도전)

1. 기업이 겪은 위기 상황
2. R&D 수행 필요성 및 개발 내용
3. R&D 성과를 통한 위기극복 내용(구체적으로)
 - 1) R&D를 통한 재도전 성장스토리
 -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 신안 등)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수상실적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우수성과 보고서 (공공혁신)

1. R&D 수행 배경 및 개발내용

2. 혁신제품 소개

3. 혁신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혁신제품의 공공·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2) 기술·경제·사회적 기여 및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 신안 등)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수상실적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

신청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4〉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 추천서

추천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추천기업과 관계	
	연락처		e-mail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또 추천기업)	기업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수행과제 정보	(사업명) (과제명) (수행성과)		
추천사유				

2023년 월 일

○○○ 기관 (직인필수)

《 추천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기업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추천사유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유관기관의 추천서가 있더라도 기업에서 신청 서식을 준용하여 신청서와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③ 추후 추천기관에 피추천기업의 성과 검증 등을 위한 별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